

#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43
----------	-------

제출년월일 : 2023. 11. 10.  
발 의 자 : 최진호의원 외 12명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특별휴가의 사용기준을 확대하는 등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직원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범위 확대 (안 제10조, 안 별표2)
  - 민간 경력자 등의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2년 미만 → 5년 미만)
  - 재직기간별 가산되는 연가일수의 확대 (2일 → 3일)
-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신설 (안 제10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 특별휴가 사용기준 확대 (안 제12조)
  - 장기재직 휴가 사용 조건 삭제 (안 제12조제3항)
  - 포상 휴가 부여 기준 구체화 (안 제12조제4항)
  - 성희롱 등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신설 (안 제12조제7항)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일부 개정 (안 별표3)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생략

6. 현행조례 : 붙임 3

7.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붙임 4

8.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조례안 예고 : 2023. 11. 3. ~ 11. 8.

## 【붙임1】 개정 조례안

###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 를 “당직근무자”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규정에 의하여” 를 “규정에 따라” 로, “본직기관” 을 “원소속 기관”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점임기관” 을 “점임 기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점임근무하는 사람이” 를 “점임 근무하는 자가” 로,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점임기관의 장은 그 점임근무자의 본직기관” 을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점임 기관의 장은 해당 점임 근무자의 원소속 기관”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따라” 를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 중 “2년” 을 “5년” 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 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병역법」 제2조제3호” 를 “「병역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배우자산후조리휴가” 를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 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 이내

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
  2.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별표2와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최진호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2)

## [별표 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 인	5
	자 녀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유산·사산	배우자	3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1)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붙임2】 산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u>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u>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 <u>당직근무자</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u>규정에 의하여</u>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u>본직기관</u>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u>겸임기관</u>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u>겸임근무하는 사람이</u>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u>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u>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겸임근무) ① ----- <u>규정에 따라</u> ----- <u>원소속 기관</u>-----.</p> <p><u>겸임 기관</u>-----.</p> <p>② <u>겸임 근무하는 자가</u> ----- ----- <u>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u> <u>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 기관</u>-----.</p>
<p>제8조(파견근무) ① <u>법 제30조의4의 따라</u>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② (생략)</p>	<p>제8조(파견근무) ① <u>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u> -----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신 설>

제12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휴가 일수는 1회에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별 잔여 휴가일수가 3일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1. ~ 3. (생략)

④ 의장은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5년 -----  
-----  
-----

제10조의2(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 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후단 삭제> -----  
-----  
-----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1. 모범적 공직생활로 포상을 받은 경우
- 2.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⑤ 공무원은 본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100일 이하의 자녀를 둔 남성공무원은 5일의 배우자산후조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자녀 출생 일로부터 10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비상근무, 기념행사 등의 각종 업무추진으로 휴식과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  
「병역법」 -----  
-----.

⑥ -----  
--- 배우자 산후조리 휴가 -----  
-----.

⑦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 (즉, 호봉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8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 인	5
	자 녀	1
출산	배우자	10
유산·사산	배우자	3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1)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 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 인	5
	자 녀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들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유산·사산	배우자	3
입양	본 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1)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